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3. 13.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3월 8일

. 회부일자 : 1996년 3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 12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 3. 13)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최 경 주)

가. 제안이유

- 시대환경의 변화, 세입기금의 중단, 내무부의 사업폐지 지침
(관련훈령폐지) 등제도변경으로 인하여
- 도에서의 운영관리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
- 잉여자금은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폐지조례 부칙에 명시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오 창 환)

-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검토한바 동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농민의 정착의식 제고와 우수농고생 및 경제작물 육성을 위한 농고지원사업과 낙후마을 특별지원사업자금의 운영관리를 위해 1982년 8월 6일 제정 시행 하여온 조례였으나, 오늘날 시대환경 및 정책사업결정방향 변화와 제도의 변경등에 의하여 90년도이후 중앙자금지원이 중단되는등 동 조례에 의한 지속적인 자금 운영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실태인바, 특히 우수농고생 지원사업은 용자금이 적고, 용자금을 지원 받은 학생도 농촌에서 영농에는 종사치 않고 대도시 및 농공단지에 취업하는등 목적과 다르게 운영됨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있어 조례만으로는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하는 것임.

다만, 이조례시행당시 용자된자금의 미회수상환금에 대한 경과조치로는 폐지조례 부칙 조항에

'96년도 회수액은 일반재원화하고

'97년이후 회수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입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 (참석인원 7인, 찬성 7인)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참고자료